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4431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392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4431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2. 23.

판결 선고 2021.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9. 30.까지는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12. 14.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피고	C	D	22,000,000	2017. 12. 19. -2022. 12. 28.	C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장려금)
피고	C	E	50,000,000	2017. 12. 19. -2022. 12. 28	C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피보험자인 C과의 주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보험금의 지급

C은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금 등을 송금하지 않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2018. 8. 21.경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29. C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69,066,664원(= 장려금 관련 보험금 19,066,664원 + 손해배상금 관련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69,066,6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0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9.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점포의 환풍기, 단열 문제등의 하자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C과의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맹사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의 하자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C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